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84호
- 나. 발 의 자 : 이종환 의원(찬성자 10명)
- 다. 발의일자 : 2022년 8월 29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9월 02일

2. 제안이유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법 인용 조항 등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도서관 및 지역사회 독서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 인용 조항 및 문구를 수정함(안 제2조, 제3조, 제6조 등).
- 나. 시장의 책무 관련 조항 수정함(안 제4조).
- 다.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제27조).
- 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시 기념품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7조).
- 마. 지식정보취약계층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40조).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광역도서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도서관법」 최근 주요 개정 현황 >

연번	의원명	주요내용
1	도종환 의원 외	·전부개정 ·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 근거 마련 ·공공도서관 등록제 근거 마련 ·특수도서관 설립 근거 마련
2	김승원 의원 외	·공공도서관 범주에 특화도서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시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

- 개정안에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4조),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6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근거 신설(안 제10조),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안 제23조~제26조), ▶공공도서관의 운영 평가 신설(안 제32조), ▶독서문화진흥 사업 수행 시 상품권, 기념품 등 지급 근거 신설(안 제37조),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진흥 근거 신설(안 제34조) 등으로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임.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시장의 책무 등 신설(안 제4조)

- 개정안은 「도서관법」 제5조¹⁾에 규정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시장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시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u> 관내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u> 관내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u>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

- 또한, 사서를 포함하여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행정, 전산, 건축 등 각각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서울시 자치구와 교육청 도서관 사서직 1,640명 중 1/3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어 도서관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및 숙련도가 형성되기보다는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책마련을 통해 사서들의 고용 및 노동환경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1)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 시 종합계획 및 도서관발전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 개정안은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추진하도록 명시된 사항을 관련법과 일치시켜 제한 시기를 완화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 종합계획 및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u>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u> 1.~4. (생략)	제5조(시 종합계획 및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u> 1.~4. (현행과 같음)

- 「도서관법」 제15조에 따라 서울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3월과 4월 사이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법에서 수립 시기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 12월로 한정된 조항은 불필요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6조~안 제10조)

- 개정안은 「도서관법」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가 신설되어 기존 동일한 기능을 하였던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광역도서관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u>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u>) 법 제24조에 따라 관내 도서관의 균	제6조(<u>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u>) 법 제17조 -----

현 행	개 정 안
형 있는 발전과 <u>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u>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u>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u> (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u>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u> ----- ----- <u>광역도서관위원회</u> ----- -----.

-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서울시 내 총 1,473개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성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관련법과 위원회 명칭을 일치시키는 차원으로 이해됨.

< 서울시 내 공공도서관 현황 >

(2021년 기준)

합계	국립 도서관	자치구 도서관	교육청 도서관	작은 도서관	장애인 도서관	전문 도서관	사립 도서관
1,473개	3개	161개	22개	1,126개	10개	146개	5개

- 개정안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시 종합계획과 도서관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명시된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신설됨(안 제23조)에 따라 삭제하였음.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능)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략) 3. 도서관의 <u>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u>	제7조(기능)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u>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u>

현 행	개 정 안
4.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생 략)	4. (현행과 같음)

- 개정 전 운영되었던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지역적인 문제만을 연간 단 1회 개최로 논의해온 바,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양한 공공도서관 전문가들을 통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 접근성 보장 등과 같은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됨.

< 2021년, 2022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안건 목록 >

연도별	안건명	개최일
2021년	·2020년 사업결과 및 2021년 사업계획 보고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서울시 시행계획 심의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서면, 2021.3.3.~3.10.
2022년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서울시 시행계획 ·서울도서관 위원회 체계 정비(안) 및 조례·규정 반영 사항 ·서울도서관 회원증발급 대상 확대 추진에 관한 사항	서면, 2022.4.1.~4.10.

- 개정안은 위원회의 인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
- 이는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성평등 관련 의무화 규정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구성) ①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구성) ① ----- ----- -----하고 특 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광역도서관위원회 운영 시 회의록 작성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임.
- 기존 위원회가 2022년 6월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해 권고를 받았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회의) ①~③ (생략) <신설>	제10조(회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4) 광역도서관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3조)

- 개정안은 광역도서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 도서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되었던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 위원 중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 -----. ③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현 행	개 정 안
<u>위원장이 위촉한다.</u> ④ <u>실무위원회의</u>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그 밖에 도서관위원회가 <u>위임한 사항</u>	<u>호선으로 정한다.</u> ④ <u>분과위원회의</u> ----- -----. 1.~2. (현행과 같음) 3. ----- <u>위임한 사항의 처리 및 의결</u>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서 분과위원회는 위원을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안전에 대해 사전검토 및 의견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이 지침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무자 간 협의·조정하는 기능으로 기존의 실무위원회와 유사하나,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 다양한 의제와 내용에 따라 각 전문 분야별로 조직화된 ‘분과위원회’로 명칭 변경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23조~안 제27조)

- 개정안은 「도서관법」 제34조2항에 따라 서울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 절차, 운영세칙 규정을 신설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23조(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u> <u>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서울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u>

현행	개정안
<p><신설></p>	<p>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도서관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 2. 서울도서관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신설></p>	<p>제25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p> <p>③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 교육, 문화 관련 종사자 2.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p>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신설></p>	<p>제2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p> <p>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③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u></p> <p><u>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 현재 서울시는 舊 서울시청 본관만이 유일한 시립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도서관 확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총 4,2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권역별(서대문, 관악, 도봉, 강서, 송파) 도서관 및 신규 대표 도서관을 2026년까지 단계별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권역별 시립도서관 현황 >

명칭(가칭)	위 치	대지면적 (㎡)	연면적 (㎡)	사업비 (억원)	향후 추진단계	주제별
시립도서관 (동대문)	동대문구 전농동 691-3외 2필지	16,899	35,200	1,515	설계공모	총괄
시립도서관 (서대문)	서대문구 북가좌동 479	3,486	9,000	338	설계공모	디지털·미디어
시립도서관 (관악)	관악구 신림동 544	5,480	6,540	246	설계공모	창업·비즈니스
시립도서관 (도봉)	도봉구 방학동 713-13외 2필지	3,101	10,500	602	공유재산심의	인문·사회과학
시립도서관 (강서)	강서구 내발산동 743	10,017	11,020	813	공유재산심의	과학·환경
시립도서관 (송파)	송파구 장지동 893	5,590	11,500	783	타당성조사	공연·예술

-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장서개발과 서비스 운영 등 본래의 기능 외에도 서울도서관 권역별 도서관 및 대표도서관의 건립과 개관·운영 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심의·자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각 도서관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특화 전문도서관으로 건립되어 지역별 정보·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요구됨.
- 또한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조도 필요한 바, ‘2021년 문화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서울시 내 박물관·미술관 중 대다수가 내부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있듯 서울도서관도 도서관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역할을 해야 할 것임.

(6) 공공도서관의 운영 평가 신설(안 제32조)

- 개정안은 서울도서관이 자치구 및 교육청을 운영 주체로 하는 도서관의 시설과 인력 및 도서관 자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운영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포상,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도서관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사서 배치 기준, 사서의 자격요건 등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32조(공공도서관의 운영 평가) ① 시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u>③ 시장은 공공도서관 운영평가를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u></p>

- 일례로 공공도서관 운영기준은 건물면적이 330㎡, 장서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최소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서울시 내 공공도서관이 2021년 기준 총 188개 관 중 42개(22.3%)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도서관의 적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서울시 내 공공도서관 내 사서 현황 >

구분	도서관 수	사서직 미달 도서관 수
교육청	22개	13개
사립	5개	1개
지자체	161개	28개
합계	188개	42개(22.3%)

※ 2021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량 중 서울 부분만 재구성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공공도서관의 평가 규정의 신설은 도서관의 적정 운영기준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7) 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지원 등 신설(안 제37조)

- 개정안은 지역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학술행사,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기념품 제공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u>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u>,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제37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u>, -- ----- --.</p>

현행	개정안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북스타트 사업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독서문화 축제, 포럼 등 독서 관련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p>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p> <p>④ 제3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p>

- 서울시는 시민이 지적 능력 향상과 평생 교육의 바탕 마련으로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 주제로 함께 읽기 독서사업, ▶지식문화공유축제, ▶서울북스타트 사업 등 독서문화진흥과 관련된 4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지역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학술행사, 독서문화행사 등 독서문화시책의 지속 가능한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서울시 독서문화진흥 지원 사업 현황 >

연번	사업명	최초 개최일	예산	사업내용
1	한 주제로 함께 읽기 독서사업	2005년	244백만원	·25개 자치구 도서관 컨소시엄에 독서토론 활성화 사업비 지원(균등지원) ·2023년 '올해의 주제'를 선정하는 공론장 운영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사업 홍보 및 자치구 사서 교육 지원
2	지식문화 공유축제	2008년	214백만원	·서울도서관 개관 10주년 기념 콘텐츠 기획 ·대표 프로그램의 개선 모델과 콘텐츠 구성 및 운영
3	서울 북스타트 사업	2019년	862백만원	·서울시 거주 '19~'22년 출생 영유아 대상 책꾸러미 배포 ·서울시 거주 취학 전 영유아 및 양육자 대상 연계 프로그램 운영 ·양육자 대상 사업 참여율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광역단위 홍보 ·사업성과 점검 및 사업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지 개발, 결과 분석, 활용 추진 ·사업 실무자 대상 역량강화교육 및 공유 회의 운영을 통한 서비스 격차 해소
4	서울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2022년	1,021백만원	「책 읽는 서울광장」 운영」 ·(공간조성) 서울도서관 열람실을 공간적으로 확장한 야외 도서관 조성 ·(프로그램) 도서, 전시, 체험, 이벤트 ·(연계행사) 책 관련 민간기관(단체)과 협력하여 책 읽는 문화의 효과적 확산

-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법률과 명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별도로 법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조례에 따른 금품제공 가능 행위(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일촌평, 답글 달기, 사진 올리기, UCC올리기 등) ▶ 추첨을 통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착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일정한 기준에 의하되, 그 기준에 도달한 자 모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회원가입, 로그인, 10인 이상 방문, 글·사진 등 게시자, 설문조사 응답자 등) ▶ 행정 목적 기여에 대한 대가 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정보 등의 오류를 수정한 데 대한 대가제공 등)
--

- 개정안은 선거 기간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독서문화진흥 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8)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문화진흥 등 신설(안 제40조)

-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인한 격리조치 및 주거시설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에게 심리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서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34조(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문화진흥) 시장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40조(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문화진흥) ----- ----- ----- -----.</p> <p>① 시장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2(이재민) 제3호 가목, 나목, 제4호 가목에 따른 재난 이재민의 심리회복을 위한 도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상실·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 2.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 3.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의 동거 가족 <p>③ 제1항과 2항에 따른 도서지원 시 이재민 도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p>

현 행	개 정 안
	<u>산, 지원대상 및 지원도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 코로나19의 사례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일상 회복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도서관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 개정안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조치이자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도서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감염병과 재난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종합 의견

- 개정안은 2022.12.8. 시행 예정인 「도서관법」에 따라 법인용 조항 등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과 상위법 및 정책환경에 맞는 조례 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이에 시장의 책무가 구체화되고 장애인 및 이주민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며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에서 명칭이 변경되는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서울시 내 총 1,473개 도서관의 균형 발전과 지식 정보 접근성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컨트롤 타워 역할이 요구됨.

- 신설되는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서울시가 지역별 정보·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된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서울시 권역별(서대문, 관악, 도봉, 강서, 송파) 도서관 및 대표도서관을 2026년까지 단계별로 건립하는 만큼 시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통해 양질의 정보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이 요구됨.

의안번호
0084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이종환 의원		2022.8.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개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에 대한 인용조항 및 용어를 수정하고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p><주요 입법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 인용 조항 및 용어 등 수정 ○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관련 사항 정비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시 기념품 등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 ○ 북스타트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지식정보취약계층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5.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 신설에 대한 조직담당관 검토결과 반영 ○ '22.6. 사전규제,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결과 반영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해당사항 없음				
대응방안	○ 해당사항 없음				
상 임 위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후계획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도서관정책과	팀장	김지안(☎2133-0220)	담당	윤현숙(☎2133-0213)